

## 고등여학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1908-1914)

김명선<sup>1\*</sup>

<sup>1</sup>선문대학교 건축학부

### Knowledge of Housing in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1908 to 1914

Myungsun Kim<sup>1\*</sup>

<sup>1</sup>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 약** 1907년 현공림이 발행한 가정학 분야 책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撰家政學』은 1908년 한국정부에서 인가된 후 1912-1914년에 걸쳐 조선총독부에서 불인가될 때까지 고등여학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로 사용되었다. 그 안에는 주택에 관한 근대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다른 과목의 교과용도서나 신문·잡지·학회지 등에 등장하는 주거지식과 마찬가지로 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구성은 좀 더 체계적이다. 이 세 책 모두 일본에서 발간된 下田歌子の 『新選家政學』(1900)을 편역한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 가족건강을 위해 주거위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려 한 근대가정학 분야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이 지식은 여성의 사회진출보다는 가정 내 주부의 역할에 고착하고 세세한 방법을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그들이 배운 주거지식은 주부로서 주거위생의 인식과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새로운 주거지식을 접한 여학생들이 그 지식을 심화하거나 실천할 여지도 거의 없었다.

**Abstract** Three books of home economics were published in Korea 1907 and approved as textbooks for women's education by Korean government from 1908 to 1910 and by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from 1912 to 1914. The textbooks contained modern knowledge about housing which was focused on hygiene matters and most systematic among the knowledge of that time. The original book of the three was *Sinsen Gajunhak*(新選家政學) by Shimoda Yutako published in Japan 1900 after her surveying western home economics knowledge. It means the modern housing knowledge educated in Korea around 1910 was affected by Western modern thinking in home economics field that gave the responsibility of housing cleanness for family members' health to housewives. So the knowledge even made the educated women to practice their learning only as wives, which was still traditional.

**Key Words** : Knowledge of housing, Home economics, Hygiene, Textbook

### 1. 서론

한국에서 여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899년 이지만 1908년에 가서야 「고등여학교령」(속령 제22호, 1908.4.2, 『관보』 1908.4.4)과 「고등여학교시령시행규칙」(학부령 제9호, 1908.4.7, 『관보』 1908.4.10)을 통해 여학교의 수업자격과 교수과목이 규정되었다. 「고등여학교령」은 고등여학교에 예과(수업연한 2년), 본과(3년), 기예전수과(2년)를 두고 각각 10·12·15세 이상이면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에게 입학자격을 주었다. 여성의 중등교육기관으로 고등여학교가 창설된 것이다. 「고등여학교시령시행규칙」과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2호, 1909.7.5, 『관보』 1908.7.9)은 家事, 手藝, 裁縫을 여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과목으로 지정하는데, 본과의 필수과목과 기예전수과의 수의과목으로 家事를 가르치도록 하여, 가사가 고등여학교로 진학하는 모든 여학생이 배워야 할 과목이 된다.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의 가사과목 교수요지는 “가사

\*교신저자 : 김명선(rosaria@sunmoon.ac.kr)

접수일 10년 02월 16일

수정일 10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10년 07월 06일

정리상 필요요 지식을 得케 하고 兼히야 근면, 節儉, 질서, 周密, 청결을 尙하는 사상을 養호를 要함. 가사는 衣, 食, 住, 간병, 육아, 家計簿記 기타 一家의 정리, 경제 등에 關한 사항을 授호미 可호미"이라고 하여,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행동방식, 가정관리요령을 가사과목에서 가르치도록 했다.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개정」의 가사과목 교수요지도 사소한 문구 차이만 있고 같은 내용이다.

한편 「고등여학교령」은 고등여학교의 교과용도서로 학부에서 편집한 것과 학부대신이 인가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고등여학교령개정」(속령 제54호, 1909.4.19, 『관보』 1909.4.20)은 학부에서 편집한 것과 학부대신이 검정한 것을 교과용도서로 하되 이런 도서가 없을 경우 학교장이 다른 도서를 선택하여 학부대신에게 인가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1908년 가정학 분야의 세 책(『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撰家政學』)이 처음 인가되어 1912-1914년에 걸쳐 불인가되기까지 가사과목 교과용도서로 사용되었다. 1912년부터 불인가된 것은 1911년 8월 23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의 '제1차교육령'의 여파로 보인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 학제를 차별적으로 구분하고(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여학생은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로, 6년제 소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여학생은 5년제 '고등여학교'로 진학, 제1차 교육령의 자세한 내용은 강명숙, 2007: 1-24 참조), 이전에 사용되던 여러 교과용도서를 불인가 처리하여 교육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필자는 앞의 가사과목 교수요지에서 '住', 즉 주거에 대해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학부 인가를 거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로 사용된 세 권의 가정학 분야 책에 주거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당시 가사 외에 수신, 박물, 생리, 위생, 생리위생 등에도 주거지식을 포함한 교과용도서가 사용되었다. 학교 밖에서도 신문·잡지·학회지 등에 유사한 내용의 주거지식이 실렸다. 요지는 개인위생을 위해 주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

명하고 그 방법을 계몽하는 것이었다(자세한 내용은 김명선, 2004: 96-155). 당시 건축분야가 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지식은 위생담론의 일부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사과목의 주거지식은 근대가정학의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즉, 가사과목의 주거지식은 근대위생담론과 근대가정학담론이라는 이중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을 근대위생론의 맥락에서 고찰한 기존연구(김명선, 2004)의 관점을 벗어나, 본고는 근대가정학의 논리적 지형 안에서 가사과목의 주거위생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1908년부터 1912-14년까지 고등여학교 가사과목에서 사용된 세 권의 교과용도서로 한정하여, 원본을 추적하여 목차를 비교하고 주거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근대가정학의 논리 안에서 가사과목 주거지식의 특징과 위상을 정리하겠다. 이를 통해 근대주거담론의 성격을 세밀하게 이해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대상을 한정된 것은 당시 사립학교에서 인가받지 않은 도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발간과 인가

학부와 조선총독부에서 김정·인가·불인가된 교과용도서를 정리하여 발간한 『교과용도서일람』(4-9판, 1910-1915)을 통해, 1907년 한꺼번에 발간된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撰家政學』이 1908년 가사과목 교과용도서로 처음 인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한문가정학』과 『신찬가정학』은 1908-1910년 학부 인가를 받지만 1912-1915년에는 조선총독부 불인가도서로 처리된다. 『신찬가정학』의 학부인가 기록은 없고 조선총독부로부터 불인가 처리된 기록이 1914년 처음 등장한다.

【표 1】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학부·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 인가·불인가 상황(1908-1914)

도서명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撰家政學***
번역자	作新社(玄公廉)**	玄公廉朴永武	朴晶東
발행자	玄公廉	玄公廉	鄭喜鎭
발행년	1907	1907	1907
문체	순한문체	국한문체	순국문체
인가년도	1908-1910	1908-1910	내용없음
인가한 학교의 정도	고등여학교	고등여학교	내용없음
불인가년도	1912-1914	1912-1914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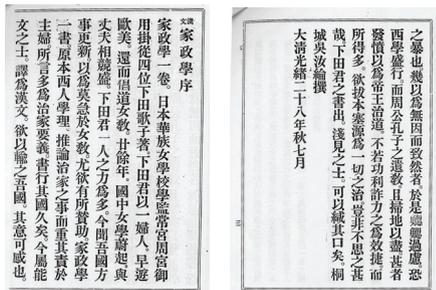
\* 학부, 『교과용도서일람』 4-5판(1910.1-1910.7) 및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 6-9판(1912-1915)에서 편집.

\*\* 『교과용도서일람』 4판(1910.1)에는 '作新社' 번역으로, 책 판권지에는 '玄公廉' 번역으로 나옴.

\*\*\* '新撰家政學'이라는 도서명은 『교과용도서일람』에 따른 것으로, 표지에는 한글로 '보통너즈 신찬가정학', 판권지에는 '國文 新撰家政學'으로 되어 있음.

한편, 1914년에는 현공림이 1913년 발간한 『新訂家庭學』(유일서점)이 불인가되는 기록도 함께 나오는데, 이 책은 『신편가정학』과 도서명만 다르고 역자·발행자·내용·번역문체(국한문혼용체)가 모두 같다. 당시 사립학교에서는 학부(조선총독부)에 검정이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일람』에 두 책의 불인가 기록이 바로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 인가신청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이 책들은 모두 번역본인데, 원저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문가정학』이다. 『교과용도서일람』 5판(1910)에 원저자가 ‘下田歌子’로 나와 있고 『한문가정학』의 ‘序’에서 下田歌子が 저술한 ‘家政學一券가정학 한 권’을 1902년 중국 桐城에서 吳汝綸이 편역했다는 내용이 나온다(玄公廉(譯), 1907: 序 1. 그림 1). 『신편가정학』은 같은 책을 현공림·박영무가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하고 현공림이 같은 해(1907) 발행한 것도 알 수 있는데, 『한문가정학』과 같은 내용(정미경, 2005: 135)이기 때문이다.



【그림 1】玄公廉(譯) 『漢文家政學』 ‘序’ 1면·3면

下田歌子(Shimoda Utako, 1854~1936)는 일본 명치시대에 제국부인협회 조직, 여학교 설립, 여성잡지 발행 등을 통해 일본 여성교육에 종사한 인물로, 1893년부터 2년간 서양의 여자교육 상황을 시찰하고 귀국한 후 가정학 분야 책 여러 권을 저술하였다(衛藤君代·熊澤亞矢子·佐藤美奈子, 1995: 7: 22). 그 중에서 중국에서 번역본이 출판된 1902년 이전에 출판된 가정학 분야 책들(『家政學』(上下, 東京: 博文館, 1893), 『家庭要訓』(東京: 同文館, 1897), 『家事要訓』(東京: 博文館, 1899), 『新選家政學』(上下, 東京: 金港堂, 1900), 『家政學講義』(札幌 北海道教育會, 1902)에서 목차와 내용을 비교한 결과, 오여륜이 원서로 삼은 “가정학 한 권”은 『新選家政學』(1900)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이 책 ‘범례’에는 일본의 “여자사범학교·사범학교여자부·고등여학교 가사교과용 및 가사를 가르치는 자가 참고하도록 편술”했고 의식주 부분은 “華族여학교와 제국부인협회 부속실천여학교에서 가르치고 실습시킨 것을 절충하여 기술”했다고 적혀 있다(下田歌子, 1990: 1-2). “편

술했다”는 기록과 “가르치고 실습시킨 것을 절충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시찰을 통해 익힌 당시 서양의 근대가정학의 추세를 반영하는 한편 직접 가르친 경험을 가미하여 실용적인 측면에 치중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下田歌子 『新選家政學』 상·하권 표지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그리고 『신정가정학』)은 각각 한 권으로 간행되고 목차는 다음과 같이 5편으로 구성되었다.

- 1편 총론/ 2편 家人의 감독/ 3편 일가의 품범
- 4편 위생/ 5편 일가의 재정

『신찬가정학』 역시 한 권이고 목차는 다음과 같다.

- 1장 어린아히 교양/ 2장 가정교육/ 3장 늙은이 봉양/ 4장 병 보음/ 5장 교제/ 6장 피난/ 7장 하인을 부림

그런데 下田歌子 『新選家政學』은 상·하 두 권으로 각각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 상권 1장 총론/ 2장 가내위생/ 3장 가정경제/ 4장 음식/ 5장 의복/ 6장 주거
- 하권 1장 소아교양/ 2장 가정교육/ 3장 양로/ 4장 간병/ 5장 교제/ 6장 피난/ 7장 노비사역

우선 『한문가정학』과 『신편가정학』(『신정가정학』)의 권수나 목차구성이 『新選家政學』과 다르다. 이는 1902년 중국에서 오여륜이 편역했고 현공림은 이 책을 수입하여 오여륜의 서문을 그대로 삽입한 채 『한문가정학』으로 재발행하는(정미경, 2005: 135;141) 한편, 박영무와 함께 국한문체로 증역하여 『신편가정학』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新選家政學』과 『한문가정학』·『신편가정학』의 외형·구성·내용의 비교는 정미경, 2005: 137-147). 당시 교과용도서나 잡지글에서 번역자에 불과해도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흔했고 편역과 완역을 엄격히 구분해서 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문가정학』 판권지에는 현공림이 편역자로 나오고 오여륜 편역본의 도서명이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공림이 중국 번역본을 편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찬가정학』 역시 『新選家政學』과 달리 한 권인데, 내용을 비교해 보면 『新選家政學』 하권만 순국문체로 편역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문이 긴 경우 문단을 끊어 소제목을 추가하고, ‘1장 소아교양’ 중 ‘소아의 질병’, ‘3장 양로’ 중 ‘노인의 의식주’, ‘4장 간병’ 중 ‘부상 및 중독’과 ‘주치의’를 생략했다.

### 3.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

표 2는 원본이 된 下田歌子の 『新選家政學』과 번역본인 『신편가정학』(『한문가정학』, 『신정가정학』)과 『신찬가정학』에서 주택 관련 내용이 나오는 부분의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A-D는 각 책의 내용이 같음을 표시한다. 아래에서는 『신편가정학』과 『신찬가정학』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책들에는 네 가지 층위의 주거지식이 등장한다. 첫째, 가정에서 임부·소아·노인·병자를 돌보는 일을 주부의 역할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는 맥락에서, 이들에게 바람직한 실내환경을 설명한다(표 2의 D), 『신편가정학』의 ‘2편 家人의 감독’과 『신찬가정학』의 ‘제1장 어린아히 교양’ 중 ‘(三) 어린아히 의복과 음식과 거처’ 및 ‘제4장 병보음’ 중 ‘(三) 병실’에 해당한다.

“姪婦가 실에 거처미 或 東 或 南에 면호야 일광이 映射호고 공기가 유통호는 處 ... 본드시 高燥明亮호는 處를 택호야 時時로 창을 開호야 공기로 호야금 신진교대케 호고...”

(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11)

“小兒의 居호는 室은 남, 동남 或 서남에 면호야 일광이 충족히 映射호고 공기가 유통호기 易케 호고...”

(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25)

“어린 아해의 거처호는 집은 남향이 德일이오 그 다음에는 동남향과 서남향이니, 반다시 햇빛과 공기가 유통호는 곳을 택호야 ... 그 잠자는 방은 맛당히 명결케 호야 ... 악호는 기운과 寤息가 업게 息지니라.”

(朴晶東(譯), 1907: 16-18)

“老人의 거실은 남에 면호거나 혹은 동남의 면호야 일광이 映射호고 공기를 유통케 息이 佳호고...”

(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66)

“病室의 방위는 남면이 好호고 동남이 其次오 地位는 正속호야 일광이 映射호고 공기가 유통호야야 可호되...”

(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80)

“병실의 ... 방위는 남향으로 호며 혹 동향으로 호야 극히 息적호며 햇빛이 息히어 공기가 유통호는 곳에 息호지라.”

(朴晶東(譯), 1907: 45)

가족 중 임부·소아·노인·병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실을 남쪽 혹은 동남쪽을 면하게 하여 채광이 충분하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둘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 주목된다. 병에 걸리기 쉬운 임부·소아·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병자의 건강에 채광과 환기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약자나 병자가 아니라도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실내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설명한다(표 2의 A). 『신편가정학』 ‘4편 위생’ 중 ‘제1장 광선과 공기와 토지의 要’ 중 세부제목 ‘제1 광선의 要’와 ‘제2 공기의 要’에 해당한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거처하면 기혈이 정체하여 정력이 약해지고 사망하게 되니 “然則 거실은 不可不 명량호는 處에 息호는 것이라”(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154-155) 그리고 “人家 거실도 時時로 창호를 開호야 공

【표 2】 『新選家政學』과 가사과목 교과용도서 3권에서 주택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의 목차 비교

下田歌子, 新選家政學	玄公廉 朴永武(共譯), 『新編家政學』 玄公廉(譯), 『漢文家政學』/玄公廉(譯)	朴晶東(譯), 『新撰家政學』	비고
상권	4편. 위생		
1장. 가내위생	1장. 광선과 공기와 토지의 要	제1. 광선의 要	A
		제2. 공기의 要	
		제3. 토지의 관계	B, C
6장. 주거	5장. 居宅	제1. 선택	A
		제2. 가옥의 구조	B
		제3. 배치	C
하권	2편. 家人의 감독		
1장. 소아교양	1장. 유아를  息育호는 대요	1장. 어린아히 교양	D
3장. 양로	4장. 양로		
4장. 간병	5장. 병자의 간호	4장. 병 보음	

기를 유통”(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160)하고 “人家에 창이 不多하거나 혹은 창을 開히기 불편한 處에는 실에 兩隅에 상하 관통한 長管을 各設히되 兩長管을 一室이 相對한 隅角에 置히면 一管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도입하고 一管으로는 陳腐한 공기를 배출시키니라”(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160-161)라는 부분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명량”한 곳에 거실을 마련하고, 창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되 어렵다면 상하 관통하는 긴 관이라도 설치해서 실내의 공기유통을 유도하라는 내용이다. 역시 주택 실내환경에 채광과 환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간단한 환기요령까지 덧붙이고 있다.

셋째, 주택의 방위를 다루는데(표 2의 B), 『신편가정학』 ‘4편 위생’의 ‘1장 광선과 공기와 토지 要’의 ‘제3 토지의 관계’와 ‘5장 居宅’의 ‘제3 배치’에 나온다. 전자는 “居宅의 방향은 南으로 面하고 北面은 忌히며”(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162), 후자는 “(주택의: 인용자) 방향은 南面이 好하고 남동과 서남이 其次로 서북에도 만약 風을 防할 森林이 有하면 良佳하고, 방향을 擇호는 일광의 影사함을 취호이니”(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209)이다. 양자 모두 주택을 남향으로 앉히는 것이 좋다는 내용인데, 후자에서 햇볕이 잘 우입되게 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후자 ‘제3 배치’에서는 뒤이어 “居宅이 광대하야도 배치가 적당치 못하면 寒暑의 患과 幽暗의 嫌을 致히리니 설계할 초에 可히 주의할 지니라”(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213)고 하여, 주택이 크고 넓어도 배치가 부적당하면 춥거나 덥거나 어두울 수 있으니 설계 초기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따라서 후자에서 주택의 적당한 배치란 태양열빛이 잘 들도록 거실·침실 등을 남향시키는 평면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택의 실외환경, 즉 주거지를 선택하는 요지를 설명한다(표2의 C). 『신편가정학』 ‘4편 위생’의 ‘1장 광선과 공기와 토지 要’의 ‘제3 토지의 관계’의 ‘1. 지형과 토양의 선택’과 ‘5장 居宅’의 ‘제1 선택’이다.

A: “지형은 高敞하야 可하고 卑濕함은 忌히며 수목이 울창한 處를 택하고 人烟이 조밀한 地는 避호지며 지질은 암석이 多한 砂土를 택하며 음수의 淸결과 기후의 온난함과 출입의 편리한 等事를 —이 고찰하야 만일 인근에 瀦水가 有하거면 住치 말지니라.”

(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162)

B: “居宅을 선택하는 법이 四端이니, 공기가 소통하고 광선이 영사하고 水量이 多하고 其質이 純良함시오 其質

과 地位의 적당함시오, 家計와 一家의 오락을 便케 함시오 兒女의 교육과 기타 百務를 行히기 편리함이니...” (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208)

C: “1. 공기와 방향: 淸량한 氣를 실내에 유통케 하라면 高燥, 開豁하야 수목이 多한 地를 擇호지라. ... 2. 지질: 지질은 砂石과 암석 등으로 成한 者라야 위생에 適하고 低陷하거는 沼澤에 隣한 地는 害가 有하고 음용하는 수량은 모다 充足케 하고 오수가 集聚하면 독기를 釀生하느니 배수의 方을 善行할 것이오.”

(玄公廉朴永武(共譯), 1907: 209)

A ‘제3 토지의 관계’에서와 B ‘제1 선택’은 주거지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한다. A는 1)높고 건조한 곳, 2) 수목이 울창한 곳, 3)인가 조밀하지 않은 곳, 4)암석이 있는 사질토, 5)수질이 淸결한 곳, 6)기후 온난한 곳, 7)출입이 편리한 곳, 8)근처에 웅덩이가 없는 곳을, B는 a)공기가 잘 통하고 b)태양빛이 잘 비추며 c)수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곳, d)토질이 적당한 곳을 택하라고 한다. 마지막 C는 ‘1. 공기와 방향’ 및 ‘2. 지질’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a)와 c)·d)를 보충 설명한다. a)에 덧붙여 높고 건조하며 탁 트이고 수목이 많은 땅을 선택해야 실내에 淸량한 “氣”가 유통할 수 있다. c)·d)에 덧붙여 모래와 암석질 땅이 위생에 적당하고 낮고 꺼진 땅이나 가까운 곳에 웅덩이가 있으면 고여 있는 더러운 물에서 “毒氣”가 건강에 해롭다고 했다. 7)을 제외한 전체 내용은 주거지에서 채광·통풍·건조·淸결 같은 위생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정리하면, 가사과목 교과용도서는 노약자·병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실내의 채광과 환기, 실외의 채광·통풍·건조·淸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부가 실천할 수 있는 요령들을 제시한다. 내용은 주택의 실내환경, 평면구성, 배치(방위), 실외환경(주거지)에 걸쳐 있다.

## 4. 결론

1907년 간행된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찬가정학』과 1913년 간행된 『신정가정학』은 1912-1914년에 걸쳐 불인가되기까지 고등여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가사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사용되었다. 이 책들은 일본인 下田歌子 『新選家政學』(1900)을 漢譯한 중국책이 수입되어 그대로 출판되거나 증역·출판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의 근대가정학이 도입되어 여성에게 가족위생의 책임자 역할을 부과하는 한편 새로운 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도록 계몽하고 있었다(成田龍

一, 1993: 29). 그 대표적 교육가인 下田歌子の 책이 한국의 초기 여성중등교육에서 사용됨으로써 일본 근대가정학의 논리가 그대로 도입되었다. 즉, “一家를 경영하는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家內 위생”(下田歌子, 1990: 12)이며 “국민의 健領은 一家의 위생에 基”(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1)하니, “주부된 자는 먼저 家內 위생에 대한 주의를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下田歌子, 1990: 12)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의 발원지로 가정이 설정되고 가정위생의 책임자로 여성이 호명되는 이러한 근대가정학의 논리에서 여성은 주거위생을 가장 잘 익히고 실천해야 할 존재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대로 가사과목 주거지식은 여성에게 주거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실천요령을 설명하는데 집중된다. 신문·잡지·학회지나 다른 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한편 실내환경, 배치와 평면구성, 주거지선택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여러 층위를 다루고 ‘居室’이라는 한 장을 할애하여 주택 전반을 다룬다. 여타 매체나 다른 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에 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나 가사과목을 통해 주거지식을 익힌 고등여학교(1912년 이후 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이 위생에 주안점을 둔 주택계획 혹은 주택개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지식과 인식을 심화시키고 건축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식민지조선에서 공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건축과로 진학하거나 유학하여 건축을 전공하거나 혹은 건축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에서 여성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 유학하여 가정학을 전공하고 귀국 후 여학교의 가사과목 교사이자 사회계몽가로 활동하는 ‘신여성’들이 1930년대 주택의 위생적 개량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양육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전문가로서 발언이었다.

가사과목을 통해 여성이 주거지식을 습득하는 의미는 가정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주부의 職은 能히 가정을 治함에 在호고 가정학의 要도 또한 此에 不外”(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4)했던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건축계획은 각 “專門學家”가 연구하겠지만 “가정을 治호는 자- 勿當히 其대략을 知호여야 可호고, 不然호 則時에 臨호야 불편호 憾이 不無호리라”(玄公廉 朴永武(共譯), 1907: 210)고 하여, 여성은 위생적인 건축계획의 대략을 알아야 하지만 가정위생의 책임자로서 필요에 불과했다. 가사과목의 주거지식은 가정 내 주부의 ‘職’에 여성을 고착시키는 근대가정학의 논리에 ‘근대적’인 근거가 되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9권 제1호, pp.1-24, 2007.
- [2] 김명선, 한말(1876-1910) 근대적 주거의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6-155, 2004.
- [3] 박선미, “여자유학생의 근대적 지식의 획득”,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pp.155-182, 2007
- [4] 전미경, “1900-1910년대 가정교과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31-141, 2005.
- [5] 船崎惠美子, “學祖下田歌子「香雪叢書」他にみられる家庭教育と女性の社會進出についての一考察”, 實踐女子短大評論 第15號, pp.69-80, 1994.
- [6] 成田龍一, “近代都市と民衆”, 成田龍一 編, 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pp.3-56, 1993.
- [7] 衛藤君代熊澤亞矢子佐藤美奈子, “下田歌子の食物教育について”, 實踐女子大學生活科學部短紀 第32號, pp.21-27, 1995.

김 명 선(Myungsu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